

정보의 웰다잉을 향한 시도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제 동향

홍명신

인하대 사회교육과 계약제 대우강사

I. 서론



기원전 1000년의 인간 평균 수명은 오늘날의 청소년 연령에 해당되는 18세에 불과했다. 인류의 역사에서 장수, 영원한 삶은 오랫동안 종교적이거나 신화적인 영역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웰빙(well-being)은 과학,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의 완성은 잘 죽는 것(well-dying)이라는 논리로 이어졌다. 죽음은 한 생명이 자신의 삶을 맺는 마지막 순간이므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이징 붐을 주도하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마지막 순간까지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관, 장례음악, 묘비, 교통수단까지 꼼꼼하게 예약한 덕분에 미국의 장례 사업 규모는 7000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을 전망이다(Hilt & Lipschultz, 2005). 여기에 계획적인 사람들은 사후에 공개될 유언은 물론 생전에 법적 효력을 받

휘하는 사전의료지시서¹⁾까지 따로 작성하느라 분주하다. 스스로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치료 범위와 수준을 미리 정해두어 더 존엄하게 더 자연스럽게 생물학적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제 웰다잉 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과 관련된 정보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오늘날 개인, 기업, 공공기관이 만들어내고 축적한 정보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되었다. 쉽게 망각하는 인간과는 달리 무한 기억을 표방하는 디지털 기억의 시스템은 예기치 못했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한 당면한 문제 해결을 향한 절박함과 법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잊혀질 권리'를 무르익게 하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대응은 국가에 따라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존의 법리를 이용해 잊혀질 권리를 꾸준히 성숙시켜온 나라도 있고, 잊혀질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나라도 있다. 잊혀질 권리를 만드

1) 사전지시의료서(living will) 또는 사전의료의향서라고도 한다. 환자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되며 중병으로 의식상태가 불명료해져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임종의료(臨終醫療)의 내용을 기록해서 의료진에게 지시하는 서류나 기록을 의미한다. 환자가 원하는 진료 및 진료의 자율성을 유지·확보해 주기 위한 조치로서, 자신이 받게 될 치료 내용에 대한 소원, 소망을 기록으로 남긴다.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의 의사 결정, (법적대리인의 지명, 완화의료 요청, 심폐소생술의 거절, 원하지 않는 치료행위의 거절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지시할 수 있다(김건열, 2011).

시 추진해야할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잊혀질 권리의 선부른 적용이 역사 왜곡과 국경을 넘은 언론 검열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우려하는 법조인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잊혀질 권리의 입법을 추진하는 대열에 섰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잊혀질 권리를 향한 거대한 흐름의 어디쯤에서 있는 것일까?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배양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정의, 배경,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Ⅱ. 잊혀질 권리의 대두 배경 및 정의 ○○

1. 잊혀질 권리의 대두 배경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잊혀질 권리는 매우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고 수십 년에 걸쳐 논란을 빚어온 해묵은 논란이 디지털 버전으로 거듭난 것일 수도 있다. 통시적인 자세로 잊혀질 권리의 뿌리를 쫓아가면 1888년 토마스 쿨리 판사의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alone)’ 판결 시점이 될 수도 있고, 1930년대 영국의 공상 과학소설이 될 수도 있으며, 1960년대 EC의 정보보호논의를 제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미디어, 국제기구, 정부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 논의는 컴퓨터가 매개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이다. 잊혀질 권리가 21세기의 현안이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다.

(1) 공유와 참여의 인터넷 확산

1960년대 초 미 국방부의 ARPA(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구상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을 관통하

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유’다. 그나마 웹1.0 시기에는 정보의 액세스(access)에 방점을 두고 소수의 정보 제공자가 중심이 되는 단방향적인 공유에 머물렀다. 그러나 웹 2.0이 도래하면서 참여, 공유, 개방은 핵심적인 키워드로 떠올랐다.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정보 생성과 소비의 역할을 동시에 맡는 능동적인 프로슈머가 되었다. ITU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는 20.8억 명이고 그 중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칭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약 15.1억 명에 달한다.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는 6억 명이며 트위터는 1.7억 명 수준이다. 전 세계 리트윗의 50%가 트윗이 생성된 지 1시간 안에 유통되고 한국에서는 불과 30분 안에 확산된다(방송통신위원회, 2011).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 사진, 동영상을 스크럽없이 게시하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공유를 역으로 해석하면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소유, 전파, 복제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로 사적인 영역이 사이버 공간의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기억의 새로운 규범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완벽한 사회적 기억을 규범화했고 망각을 예외로 만들어 버렸다. 디지털 시대 망각의 미덕을 주장하는 빅토르 메이어-숀버거(Mayer-Schonberger, 2009)는 디지털화, 저장의 저렴함, 손쉬운 검색, 글로벌 범위가 ‘삭제’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첫째, 디지털화는 처리, 저장, 검색을 분리하던 아날로그 시대와는 달리 모든 정보를 이진법적 신호로 표준화해서 저장했다. 저장된 정보는 비디오, 문자, 그 어떤 종류로 재현되어도 원본과 차이가 없다. 그러

한 표준화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유포시킨다. 아날로그 정보는 정보의 유형에 따른 고유의 공유 및 배포 방식이 있었지만, 디지털 정보는 하나의 디지털 기기(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는 사회적 기억을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둘째, 저장의 저렴함이다. 최초의 상업적 컴퓨터인 UNIVAC은 고작 1메가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었지만 100만 달러에 팔렸다. 1950년대에는 1메가바이트를 저장하려면 7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지만, 2008년에는 1메가바이트의 정보 저장비용이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2009년 구글은 1인당 무료 저장 공간을 7.3기가바이트로 키웠으며 ‘어떤 메시지도 절대 지울 필요가 없는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보 저장 비용의 급격한 감소는 무한 기억을 21세기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했다.

셋째, 손쉬운 검색이다. 디지털 컴퓨터 1세대 연구자들은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을 개발할 때 도서관 도서 목록방식을 참조했다. 이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해당 기록과 결합되어 있는 정보의 열과 행을 검색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메타 데이터를 쉽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검색하는 길이 열리면서 인간은 끝없는 비트의 바다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강력하게 인간의 기억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개인 정보 또한 검색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넷째, 글로벌 범위는 개인의 공간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다. 이용자들은 물리적으로 자신이 위치한 장소를 넘어 정보에 접근하게 해준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지털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가 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않은 정보는 쉽게

“아날로그 정보는 정보의 유형에 따른 고유의 공유 및 배포 방식이 있었지만, 디지털 정보는 하나의 디지털 기기(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영역을 넘나들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정보는 사회적 기억을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잊혀진다. 전통적인 형식의 정보 통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지구촌의 차원에서 공동 소유할 수 있게 했다.

(3) 디지털 도지에(Digital Dossiers)²⁾를 생성한 민·관·언론의 데이터베이스

과거 공동체는 소규모의 친밀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개인 정보는 친구, 가족, 이웃의 기억 속에 존재하면서 가십이나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도지에가 된다. 기업의 컴퓨터에는 개인 정보가 쌓여 있다. 우리가 무엇에 지출하고 직업이 무엇이며, 소득이 얼마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종교, 인종, 정치적 견해, 건강 문제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미국의 월란드 서비스사는 2억 1천 5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100개의 정보 항목에 따라 구분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상업적인 영역의 정보는 정부쪽으로 흘러들어가 더 큰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Solove, 2004)

특히 매스 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는 과거 기사의 부활을 가져왔다. 인터넷 이전의 정보 유통은 제한적·한시적이었다. 특정 정보에 대해 아는 사람만 아는 시대였고 언론의 기사는 미디어에 따라 고유한 유통기한이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졌

2) 도지에(Dossiers)는 원래 관련 서류 일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다니엘 솔러브는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베이스가 그 사람과 신상과 관련된 모든 서류철의 데미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디지털 도지에’로 표현했다.

“인터넷은 개인이 감추고 싶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말았다. 매스 미디어에 한번 보도된 사소한 사안이나 언론이 부적절한 기준으로 보도한 기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과거의 잘못으로 당시 법 절차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련자가 영원히 해당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디지털 도지(도지)에 남아 있게 되었다.”

다. 하지만 언론 기사의 데이터베이스는 한 번 보도된 기사의 유통과 유효기간을 거의 ‘무한대’로 만들었다. 누구나 쉽게 아무 때나 과거의 기사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재진·구본권, 2008). 인터넷은 개인이 감추고 싶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말았다. 매스 미디어에 한번 보도된 사소한 사안이나 언론이 부적절한 기준으로 보도한 기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과거의 잘못으로 당시 법 절차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련자가 영원히 해당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디지털 도지(도지)에 남아 있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 기사를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4) 생산은 쉽고 삭제는 어려운 온라인 딜레마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비용은 무료로 가깝지만 정보를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강장묵, 2011). 검색엔진에서 이름만 치면 쏟아져 나오는 개인 신상정보를 없애려면 인터넷 업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기 때문이다. 가입한 사이트 계정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않는다. 예컨대 페이스북에서 탈퇴해도 친구들 페이지에 남긴 댓글은 남는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정보 삭제와 관련한 또 하나의 이슈는 정보주체가 사망했을 때 발생한다. 더 이상 관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보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는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디지털 기억의 지속은 사자의 사생활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서 영원히 보존시킬 것이지만 지울 것인지, 삭제한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우리가 만든 사이버 상의 자아를 유기체와 달리 불멸의 존재로 인정해야 것인지, 인간처럼 죽음을 맞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어떻게 기억되는가 못지 않게 어떻게 잊을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2 잊혀질 권리의 정의

‘잊혀질 권리’라는 낭만적인 명칭의 원문을 찾아 보면 영어권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the right to be forgotten’ 또는 ‘망각의 권리(the right to oblivion)’, ‘삭제할 권리(the right to delete)’ 등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 불어권에서는 잊기, 망각이라는 뜻의 ‘oubli’를 사용하여 ‘망각의 권리(Droit à l’Oubli)’로 표기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잊혀질 권리’, ‘디지털 잊혀질 권리’ 등으로 나타내어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와너(Warner, 2005)는 잊혀질 권리를 ‘기록의 보유에 관한 법적 규제’로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Conley(2010)는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했다. 개인에 관한 기록들은 실제적으로 디지털 정체성의 일부분이며, 개인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 결정권의 핵심적 부분이며 개인에게 자신의 역사를 통제하고 그 역사 속에 숨을 수 있는 능력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타운 로스쿨의 프란츠 웨로 교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에 남겨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 권리’라고 언급했으며 유럽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주장되고 있다고 했다(Werro, 2009). 존 헨들(Hendel, 2011)은 잊혀질 권리를 발전 과정에 있는 권리로 분류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해 데이터 추적을 제거하고 구글 같은 회사에 자신의 검색 결과물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허락되는 권리’라고 해석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0)는 잊혀질 권리를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에는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개인의 권리’라고 했다. 그러한 권리는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처리될 때, 개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저장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발휘된다. 2011년 11월에 EU는 잊혀질 권리를 ‘개인이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완전히 삭제할 수 권리’로 규정했다. SNS 사이트에서 파일을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진 같은 개인적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European Union, 2011).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원하는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위탁 각각을 상세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동 사항의 이용자 인지를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SNS사업자가 게

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외부 공개 차단 기능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회원 탈퇴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진·구본권(2008)은 신문 과거 기사의 지속적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 주목했다. 이들은 잊혀질 권리를 ‘인터넷 이용으로... 일부의 사람에 대한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게 될 경우 더 이상 사회의 공공적이지 않은 사안의 기사에 언급된 관련자가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렸다. 아울러 현행 언론중재법에 과거 기사의 수정과 삭제를 명시하여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개념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매스미디어가 보유한 과거 기사 및 정보의 무한 유통’이나 ‘SNS 이용자가 자신의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유통, 저장, 삭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잊혀질 권리는 디지털 기억이 야기한 새로운 문제로서 법적 권리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개념에 해당된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개인 데이터의 보존, 보유, 삭제’의 권리나 프라이버시권의 확대로 본다면 1960년대 이래로 유럽에서 논의되어온 정보 보호 논의의 일환이며, 19세기 후반 이래로 발달해온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등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 프라이버시(digital privacy) 개념으로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제기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소송의 대부분은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시점에서 잊혀질 권리는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Ⅲ. 잊혀질 권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국제기구는 데이터 보유가 가져오는 역기능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차원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로 논의해왔고 각국이 관련 입법을 할 때 준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Warner, 2005). 본고에서는 국제기구의 흐름과 함께 동일한 서양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에 대해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동향을 고찰해 보았다

1. UN, OECD

OECD는 1984년 6월 29일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경을 넘는 개인 데이터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최초의 다국적 기관의 공정한 정보 활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OECD 가이드라인의 본문에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지만, 보조 자료에는 ‘데이터가 어떤 목적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파괴(삭제)하거나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익명의 형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 데이터에 관심이 없어졌을 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면 도난, 승인되지 않는 복제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했다.

1990년 12월 14일 유엔 총회는 전산화된 개인 정보 파일에 관한 UN 가이드라인(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을 채택했다. 데이터 보유와 관련된 원칙 3항에는 ‘파일이 제공되는 목적과 그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성립되었을 때 일정 정도의 공지를 해야 하고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인과 관련

된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개인 데이터의 (유효)기간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오늘날의 잊혀질 권리의 뼈대를 형성하는 데이터 보유의 제한 뿐 아니라 공지의 의무, 보유기간, 수집 목적, 데이터 주제에 따른 정보 이용의 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Warner, 2005).

2. 유럽

위키리크스는 유럽을 전초기지로 삼고 이른바 ‘비밀 없는 시대(no-secrets age)’를 열었지만, EU와 유럽 각국은 거대한 인터넷 기억에 대응할 주요 카드로 잊혀질 권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Hendel, 2011).

먼저 EU 차원의 움직임을 보면,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는 가장 큰 근거는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이 사적인 삶, 가족, 가정,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한 유럽인권조약 제8조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EU의 기본권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와너(Warner, 2005)에 따르면 유럽의 자료 보유 또는 보존의 원칙의 기원은 1968년에 채택된 인권과 현대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EC 권고 509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 기술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언급했으며 지방 정부의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이러한 초창기 주장이 있은 다음, 특별한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럽 위원회는 1973년에 데이터 보호법에 관련된 제안서를 만들었다. 유럽의 데이터 보호법은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하고 있는데 EC Direct 95/46/EC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특히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 하며 경제 사회적 진보, 무역의 팽창, 개인의 웰빙에 기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논의가 계속 진화하여 EU는 작년 11월에 데이터 보호 목표를 상정하면서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달과 세계화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서비스 즉 SNS, 클라우드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개인정보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한 요인으로 첫째, 새로운 기술(SNS,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원칙 적용의 명확화 및 구체화, 둘째, EU 회원국 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대한 통일성 제고, 셋째, EU 내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절차 간소화, 넷째, 개별 국가의 법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및 수집목적의 명확화 ② 개인정보 파기시한 등을 통한 잊혀질 권리 보장 ③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제도 확대 ④ EU 외 개인정보 이전은 해당국이 EU와 유사한 보호수준을 가질 때만 가능하도록 함 ⑤ 수사 및 사법당국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⑥ SNS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쉽게 인지하도록 현행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용의 간소화 방안 등이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 속에서 유럽 각국은 현실적으로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법제를 이용해 전반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최근 서방 국가들 가운데 온라인 통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의 하나다. 논란 속에서 아도피(HADOPI)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 초 ‘테러리즘, 소아 성애(paedophilia), 잊혀질 권리와 같은 주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는 말해 잊혀질 권리를 정치적 의제로 부각시켰다. 5월에 프랑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도 인터넷 공조와 함께 규제를 강조했다(Williams, 2011). 프랑스에서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업체와 이동통신 회사들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에 대해 보관기한을 설정

“EU는 작년 11월에 데이터 보호 목표를 상정하면서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달과 세계화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서비스 즉 SNS, 클라우드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개인정보보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 시일이 지나면 그 기록을 삭제하도록 하는 권리’로 간주된다. 무죄추정권과 관련된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려온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범죄 혐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구본권, 2011).

유럽에서는 단지 프라이버시권이 아니라 인격권으로 규정되는데 언론과 사인 간의 갈등은 유럽 개별국의 법정에 서기 전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4년 독일의 캐롤린 폰 하노버는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잡지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사진은 순수하게 사적인 특성과 관련된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으로서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법정은 고소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치인이나 악명 높은 공인이 아닌 고소인의 사진은 더 이상 보도가치가 없으므로 해당 사진의 출판 통제권을 그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C. von Hannover v. Germany, 2004; Werro, 2009).

한편 스위스에서는 프라이버시권 뿐만 아니라 인격권(die Personlickeitsrechte)의 일부로 잊혀질 권리를 다루고 있다. 1980년대에 스위스TV는 1939년에 사형당한 범죄자의 삶과 처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정부 공식기록, 판결문, 생존자의 기억에 토대해서 제작했다. 그런데 고인의 아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스위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소송인의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침해했다고 보고 소송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큰 틀에서 보면 범죄도 잊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형사 기소 중인 사람을 보도할 수 있지만, 그 권리는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언론과 공중은 더 이상 공식적인 기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범죄자가 공중의 무기한적인 흥미의 대상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후 스위스 연방법원에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범죄기록과 관련된 이름이 기사화되거나 저서에 언급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정보의 보도가치가 살아 있을 때에 한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잊혀질 권리가 항상 유효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해당 사건이나 기록이 오늘날의 공중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Werro, 2009).

최근에는 독일, 스위스, 체코 등지에서 구글 스트리트 뷰(street view)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게 디지털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의 처리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개인의 동의 없는 디지털 감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Hendel, 2011).

3. 미국

요사이 미국 언론은 트위터를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낸 민주당 앤소니 위너 의원의 소식이 미디어를 점령하고 있다. 연이어 위너 의원이 연방 하원회관 체육관에서 찍은 선정적인 사진까지 공개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위너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은밀하게 전송

한 사진 탓에 곧 의원직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여배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케네스 아텔만과 픽토피아닷컴(pictopia.com)에게 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이트가 공개한 12,000장의 캘리포니아 해안 사진 가운데 자신의 말리부 주택이 상세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해당 항공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 소송으로 인해 사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해당 사이트를 찾는 역효과가 일어났다. 온라인에서 조용히 잊히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더 많이 기억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이처럼 미국에서도 디지털 기억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유보적이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인터넷과 프라이버시권 모두 미국이 요람의 역할을 했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수세기동안 프라이버시에 관한 관심을 피어오르게 했다. 그러나 철학자 토마스 내이젤의 지적처럼 ‘지난 20-30년 동안 미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깨지기 쉬운 관습’으로 자리 잡고 말았다(Solove, 2008).

여기에 미국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도 일조했다. 정치적으로는 2002년 9·11 테러 발생 이후로 미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테러와의 전쟁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른바 소프트 시큐리티 방침(soft security measures)에 따라 위험인물과 관련 네트워크를 관찰하기 위해 첨단 네트워크를 활용한다(Acquisti, A., Gritzalis, S., Lambrinoudakis, C. & Capitani di Vimercati, S., 2008). 지난 9년 동안 미국 정보기관은 무려 33개의 건물을 일급비밀을 위한 정보작전을 위해 확보했다. 51개의 연방 기관들이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NSA는 매일 17억 개의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스크린하며 단서를 찾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세계 SNS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대부분 미국기업이라는 점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위키피디아,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트위터, 링크드인의 본사는 모두 미국에 있다. 심지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는 “지금 다시 페이스북을 만든다면 소수의 친구에게만 허용하는 개인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를 기본으로 설계할 것”이라며 프라이버시 시대의 종언을 주장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를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경우, 미국의 첨단기업들은 국내외에서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미국에서도 인간의 기억의 범위를 거스른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을 들여다보면,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못지 않게 개인의 디지털 절제³⁾나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⁴⁾, 현대 테크놀로지의 거부할 수 없는 실재에 대한 문화 적응 등이 제시되고 있다(Mayer-Schonberger, 2009). 기술적인 도구, 법적 규제, 사회 규범, 시장의 압력이 여타의 법과 함께 조화롭게 작동할 때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잊혀질 권리는 그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분석한다(Conley, 2010).

한편, 잊혀질 권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판단한 민간 벤처 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웹2.0 자살기계(suicidemachine.org)나 세푸쿠(seppukoo.com)는 과도한 사이버 정체성을 죽이고 현실세계의 실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을 돕

“미국에서도 디지털 기억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유보적이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 위해 설립됐다. 회원이 가입한 SNS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삭제제를 요청하면 그동안 올린 개인 정보가 모두 지워지고 계정도 없애준다. 라이프인슈어드닷컴(www.lifeensured.com)서비스는 모든 세대의 ‘생을 마감하는 계획’을 표방하는 온라인 장의사다. 회원의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생전에 지시한대로 SNS의 각종 정보를 삭제해준다(Martinet, 2011).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페이스북은 해당 사이트의 아이피(IP)를 차단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트위터·마이스페이스 등은 방관하고 있다.

4. 국경을 넘은 잊혀질 권리의 현실: 제틀 마이어 살인 사건을 둘러싼 독일, 영국, 미국의 대응

인터넷의 특성상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사안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 한 국가에서는 허용되는 권리가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유명 배우 발터 제틀마이어의 살인 사건을 둘러싼 잊혀질 권리 논란이다.

1990년 독일에서 60세의 발터 제틀마이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성적 정체성이 타블로이드신문에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범인으로

3) 기본적으로 개개인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디지털 메모리의 존재가 끊어질 수 있다. 적어도 스스로 업로드한 기록에 대한 이해와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저작권이 있는 음악, 영화, 게임, 전자책의 디지털 권리를 인정하고 미디어 기기가 부적절하게 허용된 콘텐츠의 작동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지목된 볼프강 베를레와 만프레트 라우버 형제는 중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2007년, 2008년에 차례로 출소했다. 이들은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지문을 근거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2009년 위키피디아 재단에 발터 제틀마이어 관련 항목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독일 법정은 2008년 이들의 손을 들어줬고, 위키피디아 독일어판에서 이들의 이름을 삭제되었다. 그러나 미국에 소재한 위키피디아 재단은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들어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지금도 위키피디아 영어판에는 이들이 발터 제틀마이어의 살인범이었다는 내용과 위키피디아와의 송사까지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독일 법정은 범죄자도 인격권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미국 언론과 법조계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 정보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공표되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나라의 국내법이 어떻든 간에 외국의 압력에 의해 미국의 출판물이 검열받을 수는 없다’. 또는 ‘역사의 고결함이 위태롭게 되었다. 만약 모든 출판물이 글로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검열을 따라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위키피디아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Arthur, 2009).

이 사건은 세계 유수 언론들에 의해 독일의 프라이버시법과 미국의 표현의 자유가 격돌한 사건으로 보도되었으며 잊혀질 권리의 논의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 대한 보도방식도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미국에 소재한 뉴욕 타임즈는 범죄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영국에 소재한 가디언은 영국도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가디언은 독일판도 발행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형제의 실명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알렉산더 스톱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들의 의견 을 기사에 반영했다.

이 사건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시각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역사의 기록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확인시켜 주었다. 발터 제틀마이어 사건은 잊혀질 권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 문제를 넘어 외교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충분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령 국내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환경에서 반쪽의 권리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을 말해 준다.

IV. 결론



최근 구글의 에릭 슈밋 회장은 “손가락 하나만 까닥 하면 세상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을 (구글의) 클라우드가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PC에 쌓여 있던 자료나 소프트웨어가 대형 데이터 센터로 자리를 옮겨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만 인터넷을 통해 꺼내 쓰는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팅이 상용화된다는 얘기다. 이용자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각종 기기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전 과정이 마치 하늘의 구름 속에서 숨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속에서 일어나고 거대한 정보가 집중된다면 그 편리성과 속도감 못지 않게 국제사회의 잊혀질 권리 논의도 뜨겁게 달아올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은 쉽지만, 기억은 어려운 작업이다. 당연히 영원한 기억의 시대는 분명 닳은 도전이다. 그 닳은 도전에 앞에서 국제사회는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지적)재산권, 통신비밀법, 명예훼손법 등 다양한 기존 법리를 이용하여 잊혀질 권리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그리고 개인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범람하면서 잊혀질 권리는 정보시대의 주요한 인권으로

“개인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범람하면서 잊혀질 권리는 정보시대의 주요한 인권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국제 사회는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지적)재산권, 통신비밀법, 명예훼손법 등 다양한 기존 법리를 이용하여 잊혀질 권리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지구촌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두 개의 큰 흐름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유럽과 글로벌 인터넷 잊혀질 권리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에 무게비중을 실은 미국으로 대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잊혀질 권리는 유럽의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권리를 SNS에 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어서 당면한 SNS 현안에 한해 유럽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럽의 방향성을 채택한다면 독일, 스위스의 경우처럼 살인범, 무장 강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의 언론 관련 기록조차도 삭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이를 근거로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기사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면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근거는 비워져 있는 상태다. 그러한 공백들은 잊혀질 권리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로 기록되게 할 것이다.

향후 전통적 미디어의 현실까지 고려하여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잊혀질 권리의 방향성을 잡고 해법을 내놓을 때 정보의 웰다잉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장묵 (2011. 5. 18). SNS에서 '내 정보'를 지키려면?.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67 (검색일 2011. 5. 25).
- 구본권 (2010. 1. 12). '나를 잊어줘'... 온라인에 노출된 사생활 흔적 지워라.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it/398376.html (검색일 2011. 5. 7).
- 김건열 (2011). 『존엄사II: 죽음의 바른 길을 성경에 묻다』. 서울: 최신의학사.
- 방송통신위원회 (2011). 소셜 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 신리네트워크 사회구현 전략.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이재진 · 구본권 (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회』, 22(3), 172-212.
- Acquisti, A., Gritzalis, S., Lambrinoudakis, C. & Capitani di Vimercati, S. (2008). *Digital Privacy: Theory, Technologies and Practices*. New York: Auerbach Publications.
- Arther C. (2009. 11. 13). Wikipedia sued by German Killers in Privacy Claim, Guardian
http://www.guardian.co.uk/technology/2009/nov/13/wikipedia-sued-privacy-claim (검색일: 2011. 5. 30)
- C. von Hannover v. Germany (2004. 4. 26). ECHR, Rec. 2004-VI 40EHRR 1.
- Conley, C. (2010). "The Right to Delete". AAAI Spring Symposium Series, presentations, 53-58.
- Mayer-Schönberger, V. (2009).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uropean Commission (2010. 4. 1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Com(2010)609 final, Brussels.
- European Union (2011. 11. 4). Data Protection Reform MEMO/10/542 Brussels.
- Hendel, J. (2011. 2. 3). In Europe, a Right to Be Forgotten Trumps the Memory of the Internet, The Atlantic
http://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1/02/in-europe-a-right-to-be-forgotten-trumps-the-memory-of-the-internet/70643/ (검색일 2011. 5. 31).
- Hilt, M. L. & Lipschultz, J. H. (2005). *Mass Media, an Aging Population and the Baby Boomers*. 홍명신 역(2008). 『늙어가는 미국: 미디어, 노인, 베이비 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Martinet, D. (2011. 4. 8). If You Die Tomorrow, Who Will Bury Your Data Six Feet Under?, all things digital.
http://allthingsd.com/20110408/if-you-die-tomorrow-who-will-bury-your-data-six-feet-under/ (검색일 2011. 6. 5).
- Solove, D. J. (2004). *The Digital Person: Technology and Privacy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olove, D. J. (2008). *Understanding Privac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Warner, J. (2005). The Right to Oblivion: Data Retention from Canada to Europe in Three Backward Steps. *University of Ottawa Law & Technology Journal*, 75, 75-104.
- Werro, F. (2009).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Forgotten: A Transatlantic Clash,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Colloquium, Georgetown University, Research Paper, 2, 285-300.
- Williams, C. (2011. 1. 13). Sarkozy to use G8 presidency to promote net regulation, *The Register*
http://www.theregister.co.uk/2011/01/13/sarkozy_g8_net_regulation/ (검색일 2011. 6. 4).